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1가단10550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이주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심규현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949,99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D'와 자립지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산하 중부사업단을 운영한 사업단장이고, 원고는 C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서 위 중부사업단 산하 E의 본부장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5. F 등과 함께 공증인 G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F으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와 그 같은 차용 및 연대보증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그 뒤 원고는 F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과 주식회사 H에 가지는 예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채권변제를 독촉하자 2021. 1. 23.부터 2021. 3. 25.까지 3회에 걸쳐 매월 7,649,999원씩 합계 22,949,997원을 F에게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경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는 중부사업단의 운영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원은 2020. 2. 27.과 2. 28.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1,799,000원(2,000만 원, 600만 원, 5,799,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그 뒤로도 원고는 2020. 3. 2.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중부사업단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15, 16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중부사업단을 운영하면서 허위 보험계약 체결 및 그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C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험료 대납이나 운영비 지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지시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가 F으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뒤 F이 피고가 아닌 원고들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변제를 독촉하여 합계 22,949,997원을 F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그 뒤로도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중부사업단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I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를 위해 운영비를 직접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I로부터 조달한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2,949,997원과 대여금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제12, 13,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F에게 22,949,997원을 변제하였다거나 I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J, K은 아래와 같이 사기, 보험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보험상품 판매 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기소사실 부분에서는 ‘피해회사’라 한다) 중부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원고, J, K에게 순차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모집하고, 해당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모집하면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교부받자’고 제안하고 원고, J, K은 이를 수락하여 원고는 보험료 대납 등의 역할을, J는 월급을 받거나 명의만 빌려 줄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 등의 역할을, K은 초기 대납자금을 조달하고 J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J,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보험계약을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9. 6. 21.부터 2020. 1. 10.경까지 481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283,017,0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② 2019. 11. 15. 피고가 F으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와 K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 K, J 등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주고받았다.

㉠ 2019. 11. 11. 보험료 대납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외 인건비 지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와 K은 놀랐고, 특히 K은 “아 답답하다 이 사람아”라는 글을 남겼으며, 원고는 운영비 부족으로 일부 보험료만 대납하였다. 그날 오후에 피고는 자신과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고 대여자 측에서는 (연대보증인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면서 추가로 연대보증 설 사람을 선착순으로 한명 더 받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K이 신불자(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면 자신도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K과 원고 및 피고는 대출금액과 그 사용처, 자금 마련을 위해金を 모으자는 등의 글을 주고받았다(갑제20호증 중 74, 75쪽).

㉡ 그 다음 날인 2019. 11. 12. K은 J에게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빌렸는지 확인하였고 J가 아직 빌리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의 말에 따르면 14, 15일 중에 돈 나올 거라는데(돈을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임) 고객들로부터 클레임 들어올 것이 무섭다고 하였다(갑제20호증 중 75, 76쪽).

㉢ 차용 전날인 2019. 11. 14. 피고가 원고와 B에게 내일 2시에 사무실 바로 앞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자고 하자 B이 ‘필요한 건 없니’라고 하면서 자신도 공증사무소에 가야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는 자신을 포함하여 2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B 대신에 ‘J나 L 형님이 와도 되요’라고 대답하였다(갑제20호증 중 77쪽).

㉣ 그 뒤 위 단체대화방에서 주고받은 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23. F의 계좌번호와 송금액을 알려주면서 입금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자 K이 누가 입금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금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2020. 2.부터 3. 사이 I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무렵에도 원고와 피고 등은 보험료 대납 등에 필요한 2~3,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M지점장이랑 I가 안 도와주면 폭망 이쨌, I 미팅해 봐 오전에 바로’라는 글을 보냈고, 원고는 I과 만나고 나서 피고에게 ‘씨 3천 투자에 급여는 300 4대보험인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피고가 ‘5천 투자 300백 4대 또는 3천 투 5프로 150 4대’라고 답변하자 원고는 ‘방금 I이 3,000만 원 투자, 4대 보험 가입, 급여 300만 원이라는 조건도 고민고민하던데..’라고 하면서 I의 의향을 전달하였고,

피고는 그 조건이면 매월 10%가 넘는데 그냥 다 터트리고 보험 접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다고 하였다(갑제2호증 중 7, 8, 9쪽).

⑤ 피고는 2020. 3. 3. 원고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큰일이다. 내일 시상도 마이너스고’, ‘다른 건 몰라도 FC 시상금이라도 줘야 할 텐데, 사채 쓸 데 없나 형 이름으로 라도’라는 글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씨도 1억 해 줬으니까 그쪽은 힘들 꺼고.. 다른 쪽 알아봐야 될 꺼 같은데..’라고 답변하였다(갑제2호증 중 11쪽).

⑥ 앞서 본 기소사실과 원고와 피고, K, J 등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등 공범들과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인 허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대납 등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F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지위를 서로 나누어 맡았고 위 차용금은 범행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I으로부터 조달한 금원도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게다가 I으로서는 대여금인지 또는 투자금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원고가 F에게 변제한 금원은 자신이 출연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형섭